

##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식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11일 정환모 의원외 12명 의원이  
발의하여 94년 8월 2일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음.

### 1. 안건명: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산직할시 남구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함.

#### 3. 주요골자

- 제 2조(감사) 제 2항의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함.
- 제 2조(감사), 제 3조(조사) 중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외에 본 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 제 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 3항 “국가 및 시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을 신설.

####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 36조(별지참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6조, 제 17조, 제 17조의 10(별지참조)

## 5. 검토의견

-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41호로 지방자치법 제 36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의 전문개정과 등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들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 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이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